

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

(제정 1984. 8. 1.)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제2조(장학금 종류)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27.>

1. 신입생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2. 재학생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3. StarT 장학금 <신설 2013.12.27.>

제2조의1(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) ①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입생 선발 및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학처장의 요청에 따라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종류별 장학금 항목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본조 제2조의2에서 제2조의1로 이동, 2013.12.27.] <개정 2014.1.1., 2022.6.17.>

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입생 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적우수장학금

가. 신입생전체수석장학금(수시, 정시, 추가): 신입생 전형에서 수퍼스타 1종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명을 선발하여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600만원(매월 5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22.6.17.>

나. 수퍼스타장학금(수시, 정시, 추가)

1) 수퍼스타1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 선발된 자는 4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480만원(월 4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, 개정 2013.12.27., 2016.7.19., 2022.6.17.>

2) 수퍼스타2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이내 범위에서 전형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. 선발된 자는 3년간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, 연간 도서비 360만원(월 30만원)과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0.9.14., 2013.12.27., 2016.7.19., 2022.6.17.>

3) 수퍼스타3종: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국어, 수학, 영어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등

하. 취업활동장학금: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학생에게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2.12.>

거. 창업마일리지장학금: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쌓은 학생에게 성과성 및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19.>

겨. 학업장려지원장학금: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동기부여성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19.>

고. 사회봉사장학금: 사회봉사센터 국내·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.0이상이어야 한다. <신설 2017.6.22.>

제2조의3(StarT장학금 종류 및 기준액) ①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학생 장학금 중 StarT장학금의 종류와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. [본조 제2조의4에서 제2조의3으로 이동, 2013.12.27.] <개정 2013.12.27.>

1. StarT장학금 : StarT Program에서 취득한 인증포인트(Certification point : CP) 및 장학포인트(Scholarship point : SP)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가. 수퍼스타 인증에 따른 해외연수장학금 : 500점 이상의 장학포인트(SP)를 취득하고 수퍼스타로 인증된 자에게 해외연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0.27.>

나. StarT장학금 : 장학포인트(SP) 취득자로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1포인트 당 소정의 StarT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수퍼스타 인증을 위해 학생은 장학포인트를 StarT장학금으로 수혜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 <개정 2017.6.22.>

제3조(장학금 지급 시행안 심의) 학생취업처장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장학금액 및 장학생 배정에 대한 시행안을 작성하여 장학심의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장학명, 장학금액, 지급대상 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5.18., 2013.12.27., 2016.7.19.>

제4조(장학금 신청 및 지급)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 등록자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해 감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되,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는 자는 학자금 대출상환 지급을 우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7.>

③ 계속장학생의 경우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중지된 학기도 지급기간 학기에 포함한다. <신설 2013.12.27.>

제5조(장학생의 확정)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학업성적 또는 이중지원, 등록금 초과 지급 등의 장학금 지급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장학생을 확정한다. <개정 2013.12.27.>

②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. <개정 2013.12.27.>